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87
----------	-------

발의연월일 : 2026. 8. 14.

발 의 자 : 박상혁 · 이해식 · 한민수
허영 · 문진석 · 김주영
김영환 · 박정현 · 박홍배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가치, 이해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원칙, 추진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해당사자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화와 숙의, 합의형성적 접근을 통해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 및 사회적 타협의 계기를 마련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

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며, 공공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도록 하고, 공공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등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을 규정함.

나. 갈등관리계획의 수립(안 제9조)

공공갈등관리기관은 매년 갈등관리계획을 수립, 국무조정실은 갈등관리계획을 종합한 종합갈등관리계획을 중앙갈등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함.

다. 중앙갈등관리협의회의 설치·운영(안 제10조)

- 1) 공공갈등 관리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갈등관리협의회를 설치함.
- 2) 중앙갈등관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라. 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11조)

- 1) 공공갈등관리기관은 소관 사무에 대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2) 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마. 공공갈등영향분석의 실시(안 제12조)

- 1)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 2) 다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는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바. 공론화의 활용(안 제13조)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등의 참여 및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론화를 활용할 수 있음.

사.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의 활용(안 제14조)

- 1)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2)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안별로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아.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지정(안 제15조)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갈등관리기관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자.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보고(안 제17조)

- 1)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점검·평가할 수 있음.
- 2)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인 경우 경영평가로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의 점검·평가를 대신할 수 있음.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원칙·절차·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갈등관리기관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의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공갈등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3.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의 대립요인과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공공갈등을 파악·예측·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론화”란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일반시민,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숙의(熟議)를 통해 사회적 의견을 형성하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과정을 말한다.
5. “대체적 갈등해결 방법”이란 당사자 간 협상, 제3자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 등 사법적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공공갈등관리기관의 책무) ① 공공갈등관리기관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갈등관리기관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갈등관리기관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갈등관리기관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속 직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갈등관리기관은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공동체의 사회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과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으로 공공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 보장)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일반시민이 공공정

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갈등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9조(갈등관리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공공정책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계획(이하 ‘갈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라목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갈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 공공갈등 관리가 필요한 공공정책의 선정 및 관리계획
3. 제12조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계획
4. 제14조제2항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의 활용 계획
5.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소속 직원 교육훈련 계획
6. 공공갈등관리 실적·역량에 따른 소속 직원 포상 등 지원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무조정실장은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갈등관리협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종합갈등관리계획(이하 ‘종합갈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확정 한 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갈등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종합갈등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종합갈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갈등 관리과제의 선정 및 관리
2. 공공갈등 관리 관련 실태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공공갈등관리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

⑥ 국무조정실장은 종합갈등관리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갈등관리계획의 제출 및 종합갈등관리계획의 변경 등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앙갈등관리협의회) ① 공공갈등 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갈등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갈등관리계획의 심의·조정

2. 공공갈등 관리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3. 공론화가 필요한 공공정책의 선정 및 공론화 실시

4. 그 밖에 의장이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공공갈등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⑦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갈등관리위원회) ①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위원회(이하 '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적은 기관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갈등관리기관은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갈등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계획의 수립·추진
2. 공론화가 필요한 공공정책의 선정 및 공론화 실시
3.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
4. 제3조제2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
5.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6. 제12조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실시 등
7. 제14조에 따른 대체적 갈등해결 방법의 활용·실시
8. 제21조에 따른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
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⑦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⑧ 갈등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

- 제12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는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론화의 활용) ①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등의 참여 및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론화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론화를 실시하는 경우 참여자들에게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숙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공론화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론화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의 활용) ①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

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안별로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갈등조정협의회의 협의 결과 포함하여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의 활용 결과를 해당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제15조(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지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갈등관리기관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제16조에 따른 갈등관리지침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

급 · 지원

3. 공공갈등관리기관 소속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
4. 공공갈등영향분석의 시행 및 컨설팅
5. 인공지능 기반 갈등관리 기법 개발 및 지능형정보화시스템 구축
· 운영

6. 공공갈등 관리 관련 타 전문기관과의 연계 · 협업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갈등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활용) ①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갈등관리

지침서(이하 ‘갈등관리지침서’라 한다)를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의 기본원칙 및 절차
2. 공공갈등영향분석 실무절차 및 사례
3. 공론화, 대체적 갈등해결방법 등 다양한 갈등관리 기법 및 적용
사례

4.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
하는 등 갈등관리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소관 공공정책을 수
립·추진하는 경우 갈등관리지침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보고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
정기관의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과 라목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
방공단인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의 점검·평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은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의 점검·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평가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제5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갈등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정보화시스템 구축)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갈등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갈등의 예방과 해결 사례 등 정보를 축적한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정부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갈등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공공갈등 관리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갈등관리기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갈등관리기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갈등관

리기관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갈등조정협의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